01

헌법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간 공고할 수 있다.
④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⑤ 국민투표를 거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해설 20 입법고시

①【O】

> **헌법 제130조**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O】

>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O】 제한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하므로 대통령이 30일간 공고할 수 있다.

>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O】

>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X】 국민투표를 거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 **헌법 제130조**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⑤

02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서류의 등사를 거부한 검사의 행위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인천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③ 경찰서장이 최루액을 물에 혼합한 용액을 살수차를 이용하여 살수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의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20 입법고시

① 【O】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검사)은 법원의 이 사건 열람·등사 허용 결정 이후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은 허용하고 등사만을 거부하였는바, 변호인이 수사서류를 열람은 하였지만 등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변호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수사서류의 내용을 법원에 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청구인들을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검사)이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한 등사만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② 【O】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현행법상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에게 변호인 접견신청을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어떠한 장애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접견 장소 등을 제한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국가안전보장이나 환승구역의 질서유지 등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권 제한 조치로 볼 수도 없다(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

③ 【O】 혼합살수방법은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침에 혼합살수의 근거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법령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침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지침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혼합살수행위 역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혼합살수행위는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 5. 31. 2015헌마476).

④ 【O】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피의자 등이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 통지받을 권리 및 이를 전제로 한 참여권을 일정 정도 제한받게 되기는 하지만, 그 제한은 '사전통지에 의하여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 이와 같은 제한을 통해 압수수색 제도가 전자우편에 대하여도 실효적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 및 범죄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형성된 절차의 내용이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절차적 요청**을 무시하였다거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225).

⑤ 【X】 현행 보호입원 제도가 입원치료·요양을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보호입원의 요건으로 하면서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사이의 이해충돌을 적절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을 정신과전문의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그의 자의적 판단 또는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되나,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6. 9. 29. 2014헌가9).

▶ ⑤

03 **국회 및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이 공개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③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으며,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에게 있다.

④ 국회의원의 청렴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겸직금지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⑤ 국회의원의 법률상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설 20 입법고시

①【O】

헌법 제64조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②【O】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 내용과, 전직 검찰간부인 피해자가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위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판 2011. 5. 13. 2009도14442).

③【O】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한다. … 국회가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국회의원**은 헌법 제40조 및 제41조 제1항과 국회법 제93조 및 제109조 내지 제112조에 따라서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표결할 권한**을 가진다(헌재 2007. 7. 26. 2005헌라8).

④【X】 청렴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느나, 품위유지의무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O】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 10. 29. 2009헌라8 등).

▶ ④

04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②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요건을 갖춘 후 발생하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에 포함된다.

③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장기간의 모범적인 택시운전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였거나, 고액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한 사람들이므로 개인택시면허는 자신의 노력으로 혹은 금전적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이고, 이때 재산권 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한다.

해설 20 입법고시

① 【O】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되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이 상당하다(헌재 2013. 10. 24. 2012헌바431).

② 【O】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요건을 갖춘 후 발생하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만**이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에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25).

③ 【X】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그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헌재 2016. 12. 29. 2015헌바182).

④ 【O】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장기간의 모범적인 택시운전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였거나, 고액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한 사람들이므로 **개인택시면허**는 자신의 노력으로 혹은 금전적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443 등).

⑤ 【O】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이고, 이 때 재산권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한다(헌재 2008. 12. 26. 2005헌바34).

▶ ③

05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이며,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③ 법원의 예산은 법원행정처가 아닌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④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해설 20 입법고시

①【O】

법원조직법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②【O】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 · 연임 · 정년)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③【O】 법원과 같은 독립기관의 예산도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헌법 제54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40조(독립기관의 예산) ①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X】 법관의 정년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려면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헌법 제105조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 · 연임 · 정년)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⑤【O】

헌법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④

06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소환은 대표자에 의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속성은 재선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어서, 그 침해만을 이유로 하여 국가사무인 고속철도의 역의 명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 육지는 포함되나 공유수면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20 입법고시

① 【O】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대표자에 대한 선출과 신임은 선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민소환**은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속성은 **재선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355).

② 【O】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어서, 그 침해만을 이유로 하여 국가사무인 고속철도의 역의 명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6. 3. 30. 2003헌마837).

③ 【O】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헌법재판소의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한 바에 따라,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헌재 2002. 10. 31. 2001헌라1).

④ 【O】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중 지역고권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평등권, 정당한 청문권, 거주이전의 자유, 선거권, 공무담임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사회복지수급권 및 환경권 등을 침해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과도 관련이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⑤ 【X】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헌재 2006. 8. 31. 2003헌라1).

▶ ⑤

07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ㄱ.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에 위배된다.

ㄴ.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것은 책임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입법자가 반드시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ㄹ.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형을 개정하면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그 재산을 국가귀속의 대상으로 하면 헌법에 위배된다.

ㅁ.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해설 20 입법고시

ㄱ. 【O】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307).

ㄴ. 【X】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장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선박소유자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선장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1. 11. 24. 2011헌가15).

ㄷ. 【O】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법자의 의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며,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헌재 1995. 12. 28. 95헌마196).

ㄹ. 【X】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지 아니한 자는 종전의 친일재산귀속법에 의하여 그 재산이 국가 귀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은 제청신청인의 신뢰는 친일재산귀속법의 제정경위 및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확고한 것이라거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7. 25. 2012헌가1).

ㅁ. 【O】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데, 그 내용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헌재 2011. 10. 25. 2010헌마661).

▶ ②

08 한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헌법에 규정하지 않았다.
②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최초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하였다.
④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적정임금 보장에 대해 규정하였다.
⑤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모두 규정하였다.

해설 20 입법고시

①【X】제헌헌법 제39조는 "국회와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제헌헌법(1948년) 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O】

> **제3차 개정헌법(1960년) 제78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③【O】제5차 개정헌법(1962년)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 **제5차 개정헌법(1962년) 제8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④【O】제8차 개정헌법(1980년) 제30조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 조항을 추가하였다.

> **제8차 개정헌법(1980년) 제30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O】제9차 개정헌법(1987년)은 제8차 개정헌법(1980년)의 국정조사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7차 개정헌법(1972년)에서 폐지했던 국정감사제도를 부활시켰다. 따라서 현행헌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 ①

09 **헌법상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예비후보자가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③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갖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⑤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구역표의 일부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 20 입법고시

① 【O】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록 정당으로 등록되기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5개 이상의 시 · 도당 및 각 시 · 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제한은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헌법상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제한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② 【O】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에서 정당후보자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하여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은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는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마541).

③ 【O】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헌재 2004. 12. 16. 2004헌마456).

④ 【X】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취지**를 살리고, 각 선거의 특성에 맞는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공개장소에서의연설·대담을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3. 10. 24. 2012헌마311).

⑤ 【O】 선거구구역표는 각 선거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가짐으로써 한 부분에서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서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갖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2 등).

▶ ④

10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들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것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레지던트 등 소정의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치과전문의를 의사전문의와 한의사전문의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다른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손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20 입법고시

① 【X】 그동안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 중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헌재 2019. 12. 27. 2018헌마301 등).

② 【X】 과학고는 '과학분야의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나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과학 분야에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후기학교보다 먼저 선발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자사고의 경우 교육과정 등을 고려할 때 후기학교보다 먼저 특정한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필요성은 적다. 따라서 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이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 4. 11. 2018헌마221).

③ 【O】 1976년부터 2003년까지 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를 함께 규율하던 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과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에 대하여 동일하게 규정하였던 점이나, 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 모두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과전문의의 자격 인정 요건**을 의사전문의의 경우와 다르게 규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헌재 2015. 9. 24. 2013헌마197).

④ 【X】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와 관련하여 **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와 달리 치과전문의의 경우에만 전문과목의 표시를 이유로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헌재 2015. 5. 28. 2013헌마799).

⑤ 【X】 독립유공자의 유족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보상금 총액을 일정액으로 제한하되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하며, 보상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한정하는 방법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일률적으로 1명의 손자녀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나머지 손자녀들의 생활보호를 외면하는 것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유지 및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보상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손자녀인 청구인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헌재 2013. 10. 24. 2011헌마724).

▶ ③

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불구속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③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④ 가사소송에서는 헌법 제12조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⑤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해설 20 입법고시

① 【O】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② 【X】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

③ 【O】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④ 【O】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영역으로서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는 것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사소송의 당사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송수행을 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헌재 2012. 10. 25. 2011헌마598).

⑤ 【O】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의자 등이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 ②

12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④ 야간옥외집회가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고 하나, 모든 야간 옥외집회가 항상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야간옥외집회의 법익침해가능성을 내세워 모든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다.

⑤ 옥외집회나 시위가 사전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신고제도의 목적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20 입법고시

① 【X】 이 사건 제2호 부분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사전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집회·시위가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제2호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6. 9. 29. 2014헌가3 등).

② 【O】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각급 법원 인근의 모든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상충하는 법익 사이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③ 【O】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으며, 위 조항 전부의 적용이 중지될 경우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높아, 일반적인 옥외집회나 시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집시법의 체계 내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한 규율의 측면에서 볼 때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위헌성이 명백한 부분에 한하여 위헌 결정을 한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4. 3. 27. 2010헌가2 등).

④ 【O】 야간옥외집회가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고 하나, 야간옥외집회의 시간과 장소에 따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확실하게 인정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야간옥외집회가 항상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야간옥외집회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가려내어 그러한 위험성을 예방하기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야간옥외집회의 법익침해가능성을 내세워 **모든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⑤ 【O】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가 사전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신고제도의 목적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해산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회복이라는 공익과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309 등).

▶ ①

13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직무에 흠결이 있으면 징계에 의해 파면될 수 있다.
④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려면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하여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설 20 입법고시

①【O】

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O】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③【X】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므로, 직무에 흠결이 있더라도 징계에 의해 파면될 수 없다.

헌법 제112조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O】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⑤【O】

헌법 제113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14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법률이 아닌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는 현행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한다.

④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의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개별적 행위뿐만 아니라 규범을 제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입법영역에서는 법률의 제정행위 및 법률 자체를, 행정영역에서는 법규명령 및 모든 개별적인 행정적 행위를 포함한다.

해설 20 입법고시

① 【O】 청구인(국가인권위원회)이 수행하는 업무의 헌법적 중요성, 기관의 독립성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된 청구인은 국회의 위 법률 개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10. 28. 2009헌라6).

② 【O】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0. 4. 29. 2009헌라11).

③ 【X】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상호간'이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6. 30. 2014헌라1).

④ 【O】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5. 11. 26. 2013헌라3).

⑤ 【O】 적법요건으로서의 "**처분**"에는 **개별적 행위**뿐만 아니라 **규범을 제정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입법영역에서는 **법률의 제정행위** 및 **법률 자체**를, 행정영역에서는 **법규명령** 및 모든 **개별적인 행정적 행위**를 포함한다(헌재 2006. 8. 31. 2004헌라2).

▶ ③

15 **국회의원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향하여 총 300명이고,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이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이 배분된다.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한다.

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가운데 연동배분의석수는 "[(국회의원정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 ÷ 2"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해설 20 입법고시

①【O】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②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②【O】

공직선거법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③【O】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O】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X】

공직선거법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연동배분의석수 = [(국회의원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당선인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2

▶ ⑤

16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자로부터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그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법률규정은 건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변호인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법률규정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20 입법고시

① 【O】 건설업 등록제도는 일정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법이 정하는 등록요건인 기술능력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자가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는 행위는 이러한 등록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고, 그 결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여 국민의 생명·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 등록말소만으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2. 29. 2015헌바429).

② 【X】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또한 해당 범죄를 범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라는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8. 5. 31. 2016헌바14 등).

③ 【O】 심판대상조항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에게 공무원보다 더 가혹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 1. 25. 2017헌가26).

④ 【O】 심판대상조항들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자가 그 재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 역시 입법재량에 속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라는 과태료 부과율은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정하여지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세율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재가 불합리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들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5. 7. 30. 2013헌바56 등).

⑤ 【O】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제도는 사건브로커 등 **수임관련 비리의 근절** 및 **사건수임 투명성**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절하다. … 변호사법 제29조는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131).

▶ ②

17 **생명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태아는 생명의 유지를 모(母)에게 의존하는 형성 중의 생명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헌법 제10조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③ 헌법재판소는 임신 제1삼분기(임신 14주 무렵까지)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낙태가 허용되어야 하므로 자기낙태죄 규정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하였다.

④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되므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존재한다.

⑤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군형법」은 군대 내 명령·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유사시 군의 전투력을 확보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20 입법고시

① 【X】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② 【O】 생명의 전체적 과정에 대해 법질서가 언제나 동일한 법적 보호 내지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③ 【X】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각각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더욱이 입법자는 결정가능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가능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결정가능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까지를 포함하여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앞서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한계 내에서 입법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함이 타당하다(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보충설명】 낙태죄 사건에서 단순위헌의견 3인, 헌법불합치의견이 4인이었으며,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헌법불합치결정이다. 해당지문은 단순위헌의견에 해당하는 지문이다.

④ 【X】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할 것이다.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통한 규범의 제시'와 '입법'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회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385).

⑤ 【X】 군대 내 명령체계유지 및 국가방위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와 상관 사이에 명령복종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다양한 동기와 행위태양의 범죄를 동일하게 평가하여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하여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헌재 2007. 11. 29. 2006헌가13).

▶ ②

18 국회의 의사(議事)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하여 시민연대가 평가하여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게 되면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거나, 국정감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사유는 방청을 불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국정감사 방청불허행위는 국회방청권을 침해한다.

② 오늘날 국회기능의 중점이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이동하여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법안 등의 의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 의사공개의 원칙은 위원회의 회의에도 적용되며, 소위원회의 회의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③ 「국회법」은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무제한토론의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하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같다.

⑤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은 제외한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해설 20 입법고시

① 【X】 피청구인들은 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시민연대의 평가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었고, 모니터 요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평가의 언론공표로 의원들의 정치적 평판 내지 명예에 대한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있어 청구인들의 방청을 허용할 경우 **원활한 국정감사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전면적으로 또는 조건부로 방청을 불허하였는바, 원만한 회의진행 등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인즉, 피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방청을 불허**한 것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야 할 정도로 명백히 이유없는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헌재 2000. 6. 29. 98헌마443 등).

② 【O】 오늘날 국회기능의 중점이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이동하여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법안 등의 의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이 천명한 국회 의사공개의 원칙은 **위원회의 회의**에도 적용되며, **소위원회의 회의**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09. 9. 24. 2007헌바17).

③ 【O】

>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④ 【O】

>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⑤ 【O】

> **국회법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 ①

19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건 중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국가의 안전보장 유지를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헌법은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규정하고 있다.
⑤ 대통령이 감사위원을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20 입법고시

① 【X】 헌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명령으로 하지 못하고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국가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며 또 국민의 권리의무에도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법제처 헌법주석서 Ⅲ p.517)

> **헌법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② 【O】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사고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요구되는 사고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 건인가가 문제된다. 대통령이 정신장애나 의식불명 등으로 권한대행의 필요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할 수 없을 때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관한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김학성 헌법학원론 p.987).

③ 【X】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발할 수 있고, 긴급재정경제명령 · 처분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발할 수 있다.

> **헌법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④ 【X】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에 규정된 자문회의가 아니라, 헌법에 따른 법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규정되어 있다.

> **헌법 제90조**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제91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 **제92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제9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⑤ 【X】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으로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헌법 제98조**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 당사자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③ 공포되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이미 폐지된 법률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다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신청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해설 20 입법고시

①【O】

>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X】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③【O】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구체적 규범통제인 위헌법률심판은 최고규범인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위헌법률심판 제도의 기능의 속성상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대상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시행중이거나 과거에 시행되었던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청당시에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이 결정당시에는 이미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된 법률**은 위헌여부심판의 **대상법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헌재 1997. 9. 25. 97헌가4).

④【O】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0. 15. 96헌바77).

⑤【O】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21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③ 디앤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교원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규정은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20 입법고시

① 【X】 형사재판 중 결정절차에서는 그 결정 일자가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항고 절차를 준비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민사소송, 민사집행, 행정소송, 형사보상절차 등의 즉시항고기간 1주나,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3일이라는 제기기간은 지나치게 짧다.** 즉시항고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기간 연장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헌재 2018. 12. 27. 2015헌바77 등).

② 【O】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 등).

③ 【O】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은 채취대상자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마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입법상의 불비가 있는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은 채취대상자인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헌재 2018. 8. 30. 2016헌마344 등).

④ 【O】 입법자는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행정청에 의한 자기시정의 개연성, 문제되는 행정처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치절차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적 전치절차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주성에 기한 사전심사가 필요하고, 판단기관인 재심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심리절차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 권리구제절차로서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청구권의 제약은 경미한 데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크므로, 재심제도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86).

⑤ 【O】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는 지급절차를 신속히 종결함으로써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것이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가 지급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확보되는 배상금 등 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조속한 종결과 이를 통해 확보되는 피해구제의 신속성 등의 공익은 그로 인한 신청인의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는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7. 6. 29. 2015헌마654).

▶ ①

22 다음 계산식에서 도출되는 값으로 옳은 것은?

A + (B × C) − D + E − F = ?

〈 보기 〉

○ 국회의장은 임시의회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A)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나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에는 집회기일 (B)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 예산안이 아닌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C)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무총리 또는 국무의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D)시간 이후 (E)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F)명으로 한다.

① 7
② 21
③ 27
④ 31
⑤ 51

해설 20 입법고시

A(3) + (B(1) × C(30)) − D(24) + E(72) − F(50) = 31

국회법 제5조(임시회) ①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A.**【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 B.**【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1.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C.**【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D.**【24시간】** 이후 E.**【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F.**【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 ④

23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그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해설 20 입법고시

①【O】

헌법 제114조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O】

헌법 제114조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O】

헌법 제114조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O】

헌법 제115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X】

헌법 제114조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⑤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조사실에서 수용자가 조사를 받은 동안 계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참여신청서의 작성을 요구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③ 피청구인인 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범죄혐의자들의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이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구속된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⑤ 경찰서장이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20 입법고시

① 【X】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계구사용이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검사조사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만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게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및 방어권행사 보장정신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헌재 2005. 5. 26. 2001헌마728).

【보충설명】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실에서 수갑 및 포승을 시용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도록 한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② 【X】 청구인은 이 사건 **참여신청서요구행위**에 따라 수사관이 출력해 준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피의자의 변호인임을 밝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검찰 내부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7. 11. 30. 2016헌마503).

③ 【X】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수사기관에 공사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용산경찰서장의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비로소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는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8. 8. 30. 2014헌마368).

④ 【O】 수사기관이 촬영에 협조하지 않는 이상 기자들이 수사관서 내에서 피의자의 조사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 개인보다 훨씬 더 우월적 지위에 있어 취재 및 촬영과정에서 사실상 피의자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언론사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청구인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상, 이미 청구인으로서는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언론사에 공개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 것이다. 결국 심판대상 행위들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2014. 3. 27. 2012헌마652).

⑤ 【X】 피청구인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옥외집회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이미 접수된 청구인들의 **옥외집회신고서에 대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이를 반려**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반려행위를 옥외집회신고에 대한 접수거부 또는 집회의 금지통고로 보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형사적 처벌이나 집회의 해산을 받지 않기 위하여 집회의 개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행위**는 주무(主務) 행정기관에 의한 행위로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2008. 5. 29. 2007헌마712).

▶ ④

25 「국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표결에도 참가할 수 있다.
④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기한은 90일이다.
⑤ 예산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해설 20 입법고시

①【O】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O】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③【X】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국회법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④【O】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 · 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⑤【O】 법률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나, 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다.

국회법 제86조(체계 · 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제84조(예산안 · 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